

현안연구 2021-00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제의 제도적 정착 방안

최길수

<차 례>

I. 연구 목적	1
II.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개요	2
1.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2
2. 자치경찰제의 구조	5
3. 자치경찰제의 사무 분야	6
III. 대전광역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현황	7
1. 자치법규	7
2. 대전광역시 자치경찰 사무	13
3.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19
4. 자치경찰 재정	21
IV.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 방안	22
1. 자치경찰관련 자치법규 보완	22
2. 자치경찰 조직의 역량강화	22
3.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24
4. 지역치안 거버넌스 구축	25
5. 자치경찰과 지방의회의 연계협력 강화	27
6.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의 연계협력 강화	28
7. 전략적 협력 강화	29
참고문헌	34
<부 록> 경찰법(약칭)	35

<표 차례>

<표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성	3
<표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자치경찰제 규정	4
<표 3>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사무분야	6
<표 4> 자치경찰 사무중 수사분야	6
<표 5>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문 ..	7
<표 6>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
<표 7>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의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14
<표 8>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의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6
<표 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의 지역 내 다중은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	18
<표 10>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현황	19
<표 11>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의 직급별 현황	20
<표 12>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의 팀별 사무분장	20
<표 13>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 운영예산	21

<그림 차례>

<그림 1> 개정된 경찰법의 경찰조직	2
<그림 2>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 표준운영모델(안)	5
<그림 3>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구성	20

I. 연구 목적

-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하여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 또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 등으로 정의
- 광복 이후 미군정은 경찰체제를 설계하면서 극심한 사회혼란 및 남한에서의 좌익 세력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치안업무를 효율성을 우선시한 일원적인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를 선택했고,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권교체가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
- 자치경찰제는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도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 논의의 배경에는 현행의 단일화된 국가경찰제도로는 지역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점, 지역치안의 자기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는 점 등에서 출발
 - 특히, 현정부에 들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담기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7월부터 광역단위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대전광역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기 위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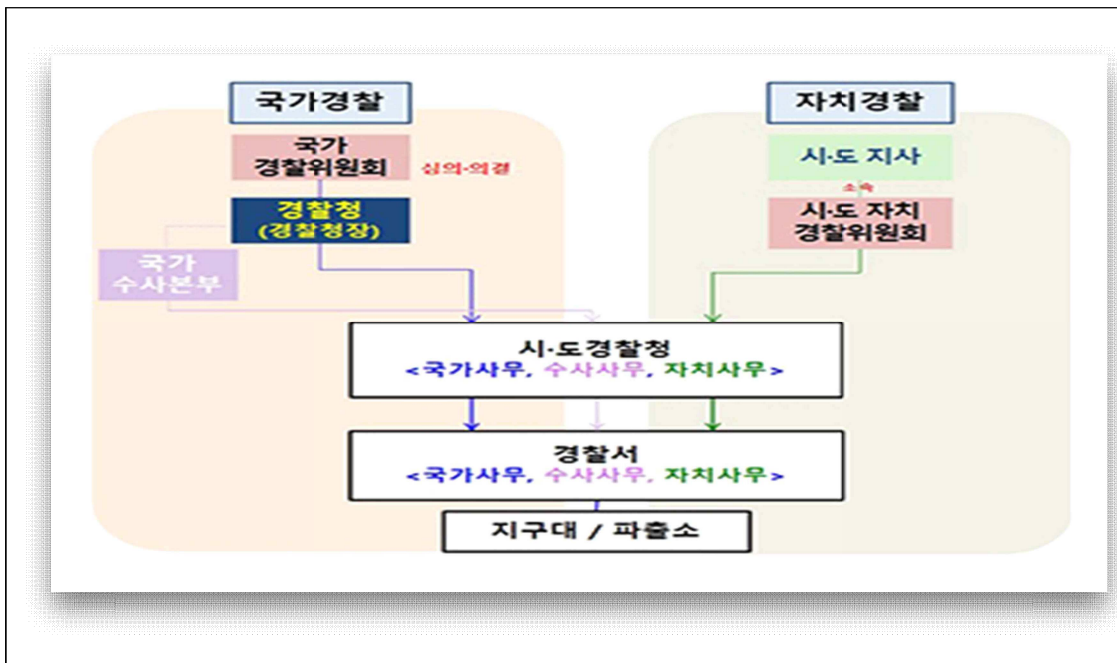
II.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개요

1.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 2020년 12월 9일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는 전국 시·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국가경찰은 조직으로 경찰청을 두고, 경찰수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함
- 자치경찰은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를 지역적 분장 기관으로 구분하고,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변경함
-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경찰청,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 설치하고, 지구대·파출소는 현재와 같이 경찰서장 소속으로 설치함

<그림 1> 개정된 경찰법의 경찰조직



○ 시·도 경찰청은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공공안전부,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수사부,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본부로 나누어 조직됨

- 경찰서는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부서로 나누어 조직됨
- 국가사무 부서는 경무과, 청문감사관, 112 종합정보실, 공공안전과로 나뉘어짐
- 수사사무 부서는 수사과, 형사과, 정보안전과로 나뉘어짐
- 자치사무 부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로 나뉘어짐

<표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구성

구분	주요 조항	구분	주요 조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경찰의 임무 제4조 경찰의 사무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제6조 직무수행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 시도경찰청장 제29조 시도경찰청 차장 제30조 경찰서장 제31조 직제
제2장 국가경찰 위원회	제7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제9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제11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32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3장 경찰청	제12조 경찰의 조직 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제14조 경찰청장 제15조 경찰청 차장 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 제17조 하부조직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제33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4장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제18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21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	제8장 보칙	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5조 예산 제36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천위원회 제22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3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24조 시도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5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제26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27조 사무기구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자치경찰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제3조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특례 제4조 경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 법안은 총 3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은 주로 제1장 총칙,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8장 보칙으로 구성

<표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자치경찰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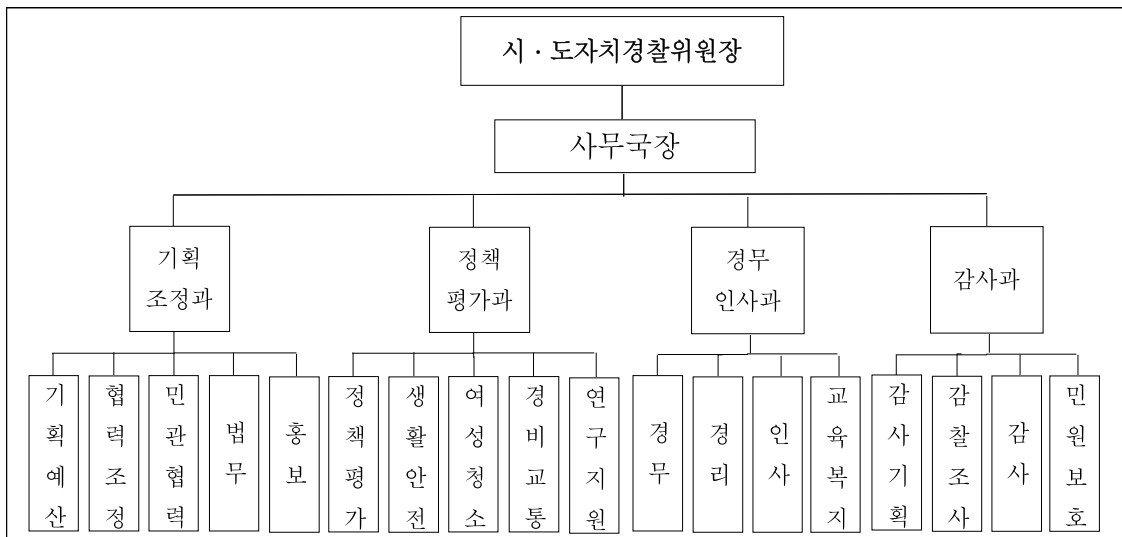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조) - 자치경찰의 사무: 관할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약 19개 세부 사무(제4조) - 시·도경찰위원회(제4장) : 경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명 및 결정 사유,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책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소관 사무, 심의·의결사항, 운영 등, 사무기구 -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제5장): 청장, 차장, 경찰서장, 직제 - 보칙: 재정적 지원, 예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2. 자치경찰제의 구조

○ 시·도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및 자치경찰 사무를 고려한 행정안전부 (2020)의 표준운영모델(안)은 다음과 같음

- 사무기구는 시·도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치안정책 연구·기획 및 평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 및 감사·감찰기능 등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됨
- 사무국 내 (가칭)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등을 설치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통합·분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시함
- 행정안전부 표준운영모델(안)에서는 시·도경찰청 정원, 업무량 등 여건에 따라 산정하고, 신규 재정소요 최소화를 위해 당초 지방공무원 혹은 경찰 충원계획 내에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시함
- 그리고 시·도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과 위원회 사무기구 내 직급은 「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대령)」을 따르도록 함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은 1급 상당, 상임위원은 2-3급 상당으로 임용함
- 사무국장은 상임위원 겸직으로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임용함
 - ※ 세종경찰청장이 경무관인 점을 감안, 위원장 2급 상당을 책정함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운영모델(안)은 국가의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반영하여 조직과 인력의 신설을 최소화한 방향으로 설정한 것임

<그림 2>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기구 표준운영모델(안)



3. 자치경찰의 사무 분야

○ (자치경찰사무) 시·도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

<표 3> 경찰법상 자치경찰의 사무분야

구분	사무의 종류
생활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 지원 ·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소년범죄·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등의 예방 ·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업무 · 주민의 일상생활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자체 등 다른 행정청 사무 제외 ·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에 대한 경비 · 지역축제 등 각종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자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표 4> 자치경찰 사무중 수사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범죄,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교통사고 및 교통관련 범죄 ·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수사 ·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p>※수사사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중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p>

Ⅲ. 대전광역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현황

1. 자치법규

○ 대전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2021년 4월 9일에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음

○ 동 조례의 전문은 다음과 같음

<표 5>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절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중복감사의 방지) ① 위원회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① 대전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권자”라 한다)로부터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방법) ① 시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위원 임명과

동시에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임명일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을 의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은 재적위원 2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 제24조에 따른 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에서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3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등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과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예산)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서 시장이 대전광역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정한 기한의 3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예산안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등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02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로 2021년 5월 20에 제정한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음

<표 6>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도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정하는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제5조(위원의 추천)

-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위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추천받은 사람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받은 사람이 법 제20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조 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다시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위원 중 2명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각각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은 재적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단독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 및 경기남·북부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회의에 부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을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 시 경찰사무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책임자가 경기남·북부경찰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의요구)

-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도지사는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인 이상 또는 도지사는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의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무

제11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① 도지사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을 경기도남·북부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주요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거나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도지사에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치경찰사무의 감사)

①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 경기도 감사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 위원회의 상임위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사무국의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예산)

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80일 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자문기구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자치경찰의 정책·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자치경찰정책·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적 지원 요청)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도민 의견수렴 등)

위원회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자치경찰정책에 관한 연구 등)

도지사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및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기산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2. 대전광역시 자치경찰 사무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은 동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중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의 고속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는 제외함

-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표 7>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의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및 범위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①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 등 지역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 추진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
	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① 지역의 범죄취약요소 현장진단 ② 범죄취약요소 개선 및 관리상태 점검 ③ 범죄예방 강화구역 관리 등 범죄 예방진단팀(CPO) 운영
	다)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활동 기획 및 운영 ②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제도 시행 및 관리 ③ 강도·절도 취약업소 범죄예방 활동
2) 주민참여 방법 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① 생활안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②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및 지원·지도
	나)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활동 시행·관리	①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요령·범죄예방교실·시민경찰학교 등 홍보활동

		②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합동순찰 등)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지원	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구조 필요시, 지역주민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지원 ②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시 지역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나) 재해 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 등	①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②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 등
	다) 그 밖에 긴급구조 지원기관으로서의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지역 내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 등의 예방	가)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활동	①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사안대응(시설 내 학대 점검 등) ③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유관기관 연계 등 보호활동 ④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 예방·대응 활동	① 지문 등 사전등록 업무 ② 실종·유괴 경보 체계 구축·운영 ③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대상시설 지도·감독 ④ 유전자 채취 및 보호시설 등 일제수색 운영
	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선발·배치·감독 ② 아동안전지킴이집 관리 및 운영·교육·홍보 ③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① 청소년 비행방지, 선도·보호활동 ② 위기청소년(가·피해학생,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면담·관리 ③ 위기청소년 발굴(거리상담 등) 및 유관기관 연계 ④ 소년범 선도제도 운영(선도프로그램, 선도심사위원회, 전문가참여제, 우범소년 송치) ⑤ 경찰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한 청소년 참여 제도 운영(정책자문단 등)
	마)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① 가정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가정폭력 피해자 유관기관 연계 등 보호활동 ④ 가정폭력 사안대응(협업회의 참석 등) ⑤ 가정폭력 관련 학대예방경찰관(APO)운영
	바)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폭력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학교폭력 사안대응(학교폭력대책위원회 참석, 117사안대응 등) ③ 청소년육성회 등 지역 내 학교폭력 유관단체와 협업 업무 ④ 청소년경찰학교,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⑤ 학교전담경찰관(SPO) 운영
	사)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폭력범죄 예방활동(교육·홍보 등)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유관기관 연계 등 보호 활동
	아)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 예방 업무
5)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가)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과태료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② 지역 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대상 계도 및 홍보 등
	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풍속영업의 지도·단속 ② 성매매 단속(수사사무 제외)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④ 사행행위 지도·단속
	다)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 등 자치경찰 수사사무 관련 신고 처리 ② 풍속영업, 기타경범, 보호조치 등 지역 질서유지 관련 신고 처리 ③ 분실습득, 상담문의 등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신고 처리
	나) 지하철, 내수면 등 일반적인 출동이 어려운 특정 지역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한 경찰대 운영	① 지역 특화 경찰조직(지하철경찰대 등)설치·운영(수사사무 제외)

다) 유실물 보관·반환·매각·국고귀속 등 유실물 관리	① 유실물 처리업무 계획 및 지도·감독 ② 습득물·분실물 신고접수 및 보관 ③ 유실자 확인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 시 물건 인계 ④ 법정기간 만료 시 국고·금고 귀속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응급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유관기관 협력	① 응급구호대상자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 긴급구호 요청 및 인계(다만, 필요시 경찰관서 임시보호 조치) ② 응급구호대상자 휴대 무기·흉기 임시영치 ③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응급구호대상자 유관기관 협력
마)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관련 법령에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지역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표 8>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의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가)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①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③ 그 밖에 교통법규 위반신고 처리(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사항 제외)
	나)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① 음주단속장비 등 구매·보급 ② 음주단속장비 등 검정·교정 ③ 음주단속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2) 교통안전 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① 교통안전시설 운영계획 수립 ② 교통신호기 설치·관리·운영 ③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④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⑤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⑥ 그 밖에 도로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관련 조치
	나)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①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영	
	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교육계획 수립·시행 ② 교안, 리플렛 등 교육자료 제작·배포
	나)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① 지역주민 대상 교통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② 교통안전 홍보물품 구매·보급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가) 교통활동 지원 협력 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①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단체 구성 ②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교통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자 모임 및 학부모 단체의 교통안전 지원활동 관리
	나)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활동 지원 및 지도	① 무사고 운전자 선발·관리 ②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가)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① 안전기준 초과승차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②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 허가 신청서 접수·허가증 발급
	나)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① 도로점용허가 필요 조치 ② 도로공사 신고 관련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
	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접수 및 신고증명서 발급·재교부 ②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및 계도·단속
	라)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① 긴급자동차 지정증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긴급자동차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마)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①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③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취소 및 지정증 회수
	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① 견인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 접수·지정증 발급 ②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취소·정지 및

		지정증 회수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① 교통사고, 사망·대형사고 신고 처리 ② 음주운전, 교통위반 신고 처리 ③ 교통불편 신고 처리
	나)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① 운전면허 발급·재발급·갱신 신청·접수·교부 ②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접수 ③ 국제운전면허 신청접수 및 교부 ④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⑤ 기타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다)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①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② 교통정보 연계(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등과의 연계)
	라)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① 출·퇴근 시간대 및 상습 정체 구간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관리 ② 안전사고·재해·재난 발생 시 이동로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통제 및 관리
	마)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① 시기별·취약 대상·위험요인별 지역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② 지역 교통안전협의체 구성·운영 등 교통안전 분야 유관기관 협업
	바)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① 지역 교통영향평가, 교통성 검토 등 교통소통 관련 협의 ②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등 관련 협의(도로관리청이 국토부장관인 경우는 제외) ③ 「교통안전법」상 안전진단, 사고조사 관련 협의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관련 협의 ⑤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표 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관한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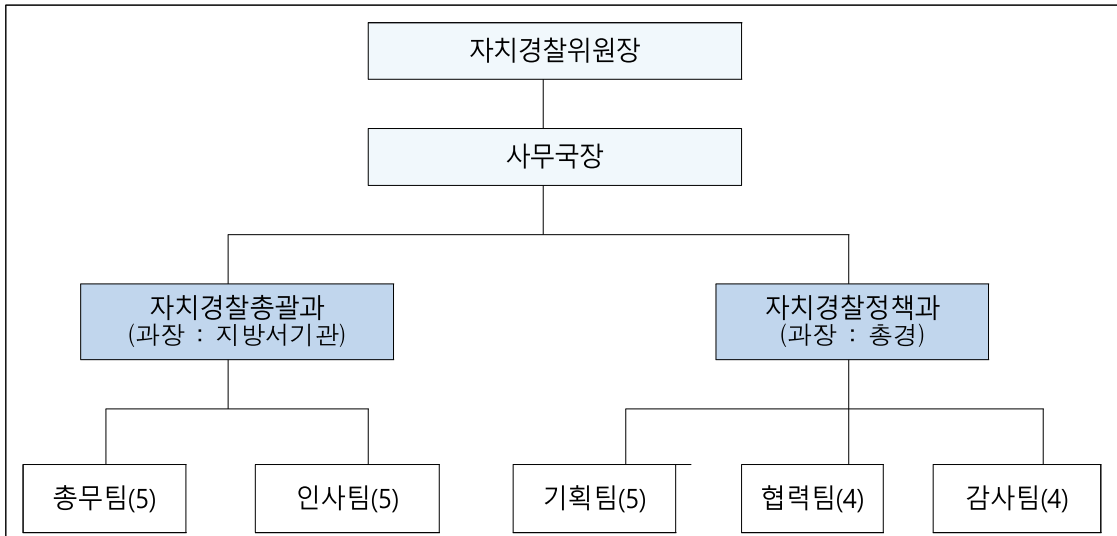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내용
-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	① 다중운집 행사장 주변 주요 교차로 소통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지원 ② 행사장 주변 보행자 등 교통사고 예방

	리 지원	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① 다중운집 행사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지원 ② 행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지원

3.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은 1국 2과 5팀이며, 인력은 총정원 27명(정무직 2, 지방공무원 22, 경찰공무원 3) 임

<그림 3>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구성



<표 10>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인력 현황

구분	담당 현황	정원	현원	과(결)원
계	5개 팀	27	22	△5
자치경찰총괄과	총무팀, 인사팀	13	12	△1
자치경찰정책과	기획팀, 협력팀, 감사팀	14	10	△4

<표 11>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의 직급별 현황

(2021.5. 3. 기준, 단위: 명)

부서별	직급별 구분	일반직						
		계	1-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소계	정원	27	2	2	5	11	6	1
	현원	22	2	2	5	3	6	4
자치경찰총괄과	정원	13	2급1 3급1	행정1 -	행정1 경정1	행정4 -	행정3 -	행정1 -
	현원	12	2급1 3급1	행정1 -	행정1 경정1	행정1 경감1	행정1 경위1	행정2 경사1
자치경찰정책과	정원	14	-	- 총경1	행정3 -	행정6 경감1	행정3 -	- -
	현원	10	-	- 총경1	행정2 경정1	- 경감1	행정2 경위2	- 경사1

<표 12>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의 팀별 사무분장

과	팀	역할	업무
자치경찰 총괄과	총무팀	자치경찰제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경찰위원장실 및 사무국장실 관리 ▶ 사무국 운영·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서무, 회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 자치경찰사무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요구 취합, 위원회 심의·의결, 편성, 배정 등 ▶ 자치경찰사무 예산(국비),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사항
	인사팀	자치경찰사 무 담당 공 무 원 인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위원회 운영 등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사항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대전경찰청장 임용 협의 ▶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 및 통보
자치경찰 정책과	기획팀	지역 맞춤 형 치안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목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설정, 평가, 환류(목표재설정) ▶ 자치경찰사무 정책 수립 ▶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점검
	협력팀	자치경찰제 추진체계 구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협의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조정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조정 ▶ 자치경찰제 홍보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감사팀	자치경찰사 무 담당 공 무원 복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징계요구 ▶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 감찰요구 ▶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개선

4. 자치경찰 재정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 운영예산은 총198,322천원(1회 추경심의자료 기준)이며, 지방 및 치안행정의 연계협력 추진을 위한 예산이 78,337천원(약39.5%), 인력운영비가 66,459천원(약33.5%), 그리고 53,526천원(약27.0%)으로 구성됨

<표 13>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1년 운영예산

(단위: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비고
	계	198,322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지방 및 치안행정의 연계협력 추진	78,337	
	• 사무관리비	43,655	
	• 행사운영비	12,000	
	• 국내여비	5,594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88	
	• 일반보전금	2,000	
	인력운영비	66,459	
	• 기준인건비	66,459	
	행정사무경비	53,526	
	• 사무관리비	38,825	
	• 국내여비	6,677	
	• 업무추진비(기관운영, 부서운영)	8,024	

IV.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제도의 정착 방안

1. 자치경찰관련 자치법규 보완

-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야 할 것임
 - 예컨대,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구의 설치, 도민 의견수렴 등, 자치경찰정책에 관한 연구 등에 관한 규정을 대전시의 경우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자문기구의 설치에 시장이 경기도 자치경찰의 정책·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자치경찰정책·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함
 - 시민 의견수렴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 의견수렴 등을 위한 것임
 - 자치경찰정책에 관한 연구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및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등에 필요한 시책을 연구하는 조직임

2. 자치경찰 조직의 역량강화

-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민생치안 중시, 범죄예방 및 두려움 감소, 지역중심의 경찰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민봉사, 공조협력치안, 시민과 경찰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면서 시민참여를 통한 협력치안을 강조하고 있음(최길수, 2019: 122, 재인용)
- 일반적으로 역량은 조직의 미션 및 전략 달성, 바람직한 기업문화 창출에 필요하고, 조직내의 개인이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임(최길수, 2019: 122, 재인용)
- 지역경찰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 통일된 견해는 없으며, 단지 매년 경찰청이 수립하는 ‘지역경찰 평가계획서’에서 나타난 지역경찰의 임무의 관

점에서 보면, 112신고출동 및 초동조치 뿐만아니라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범
죄예방, 범인검거, 현장 질서 유지 및 교통정리, 여론청취 및 첩보수집 등 경찰의
전 기능을 아우르고 있음(최길수, 2019: 122, 재인용)

○ 지역경찰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경찰교육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자 하는 국가기관의 제반노력을 의미하며, 경찰교육훈련은 정보사회에서 급변하
는 행정수요와 국가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
키고 제공하는 인사행정분야의 능력발전 기능임(최길수, 2019: 126, 재인용)
-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특정 분야의
업무역량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역량모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조직 구성원
이 가지고 있는 각 역량의 수준은 어느정도이고 갖추어야 할 역량수준은 어느 정
도인가를 파악하는 교육훈련수요조사가 뒤따라야 함(최길수, 2019: 126, 재인용)
-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시 지역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수단
은 관련 공직자(경찰관, 시청 경찰관련 업무수행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임(최길수, 2019: 126)
- 어느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요소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수요조사를 실
시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 요구되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
에, 대전의 지역치안 역량요소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활용하
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교육훈련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임(최길수, 2019: 126-127)
-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역경찰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은 자치분권시대의 지역경
찰의 역할, 본격적인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찰의 역량 및
강화,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역경찰이 갖추어야 할 역량 등이 필요함(최길수, 2019:
127)
- 따라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과정에 지역치안 관련 공직자 및 희망
자를 위해 치안역량 강화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최길수, 2019:
127)

3.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 현재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경찰’ 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활동은 자치경찰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조성호 외, 2020: 179)
- 자치경찰에서의 주민의 지위는 치안서비스의 대상, 치안서비스의 협력자, 경찰의 감시자, 지역치안의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함(조성호 외, 2020: 1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안서비스 대상) 지역주민들은 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 대상이나, 경찰의 대다수 업무는 법 집행 사무이기 때문에 규제 중심일 수밖에 없어, 경찰 서비스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보호 서비스도 있지만 규제대상이 더욱 많음- (치안서비스의 협력자) 주민은 경찰에 범죄신고, 정보제공 등 간접적인 협력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야경단과 같이 지역 치안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함- (경찰의 감시자) 각종 위원회나 언론 등 공식·비공식 통로를 통하여 경찰권 행사를 감시함- (지역치안 주권자) 자치경찰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경찰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의 구성에 직접 관여하거나 투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여함(조성호 외, 2020: 197-180)

- 자치경찰에서의 주민참여는 지역치안의 질을 향상(지역주민들은 지역의 치안환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자치경찰관과 협력할 경우 질 높은 지역치안을 제공), 인력 및 자원 보강 효과(자원봉사 등으로 부족한 자치경찰관의 수를 보강하며, 차량 및 드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장비 보강 가능), 지역치안의 신뢰성 확보(주민 참여는 지역치안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되 주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성 제고됨) 등의 차원에서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음(조성호 외, 2020: 181)
- 반면, 자치경찰에의 주민참여는 경찰과의 유착(자치경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

는 주민이 자치경찰과 유착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 지역치안의 왜곡 및 편향화(자치경찰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공적인 기능보다 사적인 친목모임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치경찰활동은 관련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느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등의 역기능도 있음(조성호, 2020: 181)

-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참여 조항은 없으나, 주민참여 관련 조항은 있음(조성호, 2020: 183)

- 예컨대, 동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 및 나(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제2호의 나(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등임
- 현재 우리나라 법령이나 향후 법령에 의해서는 주민들이 지역치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현재의 자원과 규정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역치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4. 지역치안 거버넌스 구축

- 자치경찰 거버넌스는 기존에 지역경찰 거버넌스 또는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내용에 지방자치 이념을 더한 확장된 개념으로 논의함으로써, 참여주체들이 협치를 통해 생활밀착형 치안활동의 민주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최길수, 2019: 117)
-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공식적(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운영 형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치안행정위원회’가 대표적임(최길수, 2019: 11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장(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형태임

○ 외국의 치안거버넌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의 이웃지킴이 프로그램(SNP: Save a Neighborhood Program)은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의 공공안전을 침해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음(최길수, 2019: 119, 재인용)

- 42개의 시민조직과 6개의 지역사회 공공기관, 해당 지역경찰국 그리고 10개의 비영리지역단체를 중심으로 운영
- 6개의 중점감시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과 보도순찰 경찰로 구성된 합동순찰조를 조직하여 볼티모어 시내에 마약밀거리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도시 황폐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 외에도 빈집철거·잡초 및 쓰레기 제거·담장 보수 등 공공안전을 저해하는 도시환경정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경찰 활동을 하였음
- 그 결과 6개 지역의 도시황폐지구가 복구되었으며, 주민참여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아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음

- 둘째, 영국의 스페이스 프로그램(SPACE: Staffordshire Police Activity and Community Enterprise Program)은 여름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음(최길수, 2019: 119, 재인용)

- 경찰과 다른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음
-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2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해당 카운티의 29개 지역이 지정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 정규경찰관 및 10,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였음
- 그 외 민간버스회사는 무료로 각 행사 장소에 청소년들을 운송해 주었고, 지역 군인단체의 도움을 받았음(박주상, 2013: 34, 재인용)

- 셋째, 일본의 안전마을 추진회의는 가나자와현의 ‘범죄 없는 안전·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경찰, 사업자, 주민대표 등 48개 단체로 구성된 ‘오사카부 안전마을 추진회의’를 설립하여 각 경찰서 단위별로 ‘안전마을 추진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최길수, 2019: 120, 재인용)

- 지역치안 거버넌스 구축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및 보전하는 활동에 지역의 치안 관련 모든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치안활동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광역시도 본격적인 자치경찰제의 출범과 함께 대전형 치안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최길수, 2019: 120)

5. 자치경찰과 지방의회의 연계협력 강화

-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을 통하여 통상적인 자치경찰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경찰제 관련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치경찰 관련 예산에 대해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그리고 지방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중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영향력을 미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감사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음
 - 따라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지방의회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치경찰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조례 및 규칙 등을 통해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바, 이 과정에서 시장과 시의회의 유기적인 협력 등 도의회의 선제적 역할이 필요함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함)에 따라 시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시의회는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서 뿐만이 아니라 시의회가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결을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편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6.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의 연계협력 강화

- 특별사법경찰이란 결국 행정기관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로 행정기관 소속직원(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함(조성호 외, 157, 재인용)
- 개정된 경찰법에서는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배제되어, 향후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자치단체에서는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을 분리·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수사의 유사중복 등에 따른 비효율을 우려하고 있음(조성호 외, 157, 재인용)

- 개정된 경찰법에서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분리형 채택으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연계·협력 필요성의 증가함

※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통합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유형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치단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무의 수행과 함께 국가경찰의 치안유지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는 유형임

- 자치경찰과 대전시의 특사경(민생사법경찰)과의 연계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사무의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방안, 공동교육훈련의 실시,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의 합동단속 실시 등의 영역임(조성호 외, 2020: 155-170)

-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은 상호 간 정보공유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상호 간 협의,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결과를 공유할 수 있음

- 사무의 협력처리 강화는 상호 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은 ①상호 간 수사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무에서 도출하고, ② 수사업무연계·협력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TF팀과 인력을 편성하는 것, ③ TF팀에서 공동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각 기관으로 환원하는 것임

- 인사교류방안은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상호 간 파견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며, 중요한 분야에서 특

별사법경찰 업무담당 공무원 간의 전문성 확보 및 상호 간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별사법경찰은 관련 행정업무에 대해 전문가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수사실무능력이나 방법이 부족함에 따라 수사기법과 법률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현행 특별사법경찰의 교육은 자치단체에 소수 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사법경찰과 연계하여 경찰학교에 위탁교육, 검찰관련 교육, 경찰대학 관련학과와 연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자치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지역 내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경우, 경찰은 현행법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이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범 단속과 처벌에 있어,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함으로써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7. 전략적 협력 강화

1) 자치경찰과 재해재난관리와의 연계협력

- 미국, 영국, 일본 등 소위 경찰행정의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인명피해의 최소화, 재난관리의 선제대응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조성호 외, 2020: 176, 재인용)

- (미국의 Zone Policing)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확대하여 각 지역에서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경찰이 단위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책임자, 지역의 홍수관리자, 건물관리자 등을 선정하여 경찰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수시로 훈련을 실시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조성호 외, 2020: 174)
- (영국의 지역위기관리포럼) 포럼의 책임과 운영은 경찰이 담당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에도 전반적인 포럼을 관리하지만 질병이나 기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 책임을 맡음. 위험한 지역이나 상황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방지하거나 위기 상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조성호 외, 2020: 174)
- (일본) 다양한 재해재난이 발생하여 재난별 초동대응 훈련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고 피해지역에서 이재민의 피난유도 및 구호활동, 실종자 수색, 원자력 재해 대응, 긴급 통로 확보 등 각종 교통대책, 피난 지역의 안전·안심의 확보 등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조성호 외, 2020: 174)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대응 중심에 자치경찰의 역할이 있었음(조성호 외, 2020: 174, 재인용)

- 제주도는 자치경찰을 통해 기관협조에 소요되는 중간단계인 기관 간 협조요청과 내부검토, 협조사항 조정을 통한 통보를 생략하고 즉시성 있는 조치는 시행하여 초기 위기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음
- 국가경찰은 통제와 규제와 같은 질서유지에 초점을 두고 자치경찰은 ‘친서민 치안활동’ 과 같은 지원업무에 초점을 둬으로써 지역사회 위기극복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음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들이 어려움도 지속되자, 제주자치경찰은 기존의 통제와 질서유지 중심의 경찰활동을 친서민 치안활동으로 전환하여 도민에 대한 위무(慰撫)와 지원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음

2)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기관과의 연계협력

○ 자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생활밀착형 위기관리에 대하여 자치경찰과 지역 보건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함(조성호 외, 2020: 174, 재인용)

- 자살의 경우 초기 대상자 발굴이 중요한데, 이는 당사자 본인 및 가족이 요청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 복지상담전문관, 복지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 등에 의뢰할 수 있는데, 경찰 112센터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위기에 대한 대응을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극단적 선택을 만류 후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자살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3) 자치경찰과 교육행정과의 연계협력

○ 2020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수사부서 간 정보공유 다양해지고 청소년안정네트워크 연계협력이 요구됨(조성호 외, 2020: 177)

- 경찰·지자체·교육기관·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자립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를 유지하여 청소년의 선도에 기여할 수 있음

- 파주시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지원을 총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자체 경찰서의 협업으로 청소년경찰학교를 설립하였음

· 파주시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일부를 청소년경찰학교 설립 공간으로 사용하여 각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운영해나갈 예정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경찰장비·제복체험·과학수사 체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가·피해자 역할극, 몰카 탐지 체험, 교통안전 체험 등으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

○ 학교폭력예방 차원의 국외 선진정책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조성호 외, 2020: 177)

- (미국) 학교폭력예방 주요정책은 크게, 법령 제정, 학교폭력예방 대책 마련, 폭력 피해 학생 대상 학교선택권 제공, 위기관리 코디네이터로 정리할 수 있음

· 안전하고 마약이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법령 「The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94」을 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교사, 학교, 학

- 부모들에게는 학교폭력 방지와 마약남용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유해물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함
- 위기관리 코디네이터는 단위학교에 파견되어 학교위기관리 조직을 관리, 감독하며 학교폭력과 같은 위기 발생 시 갈등조정자 역할하고, 또한 지역교육청의 교장 직속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교내외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태해결을 주도할 수 있음(조성호, 2020: 177)
- (영국) 학교폭력예방 주요정책은 크게, 청소년 범죄증가 원인 분석, 학부모에게 학생지도의 일차적 책임 부과, 위기학생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역할 강화, 법령을 통한 책임과 역할을 명시함
- 경찰은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 지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시간을 정할 수 있음
 - 법령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대한 학교, 학부모, 자치단체,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각각 명시함으로써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일본) 학교폭력예방 주요정책은 크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처방향의 변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 편성, 폭력행동에 대해 엄격 대응, 학교 내외의 구체적인 개입 방안이 있음
- 방법협회는 범죄의 방지, 폭력의 배제 외에 소년비행 방지와 건전육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실천적 거점으로 일본 전국각지의 경찰서 단위에 방법연락소가 설치되어 활동 중임
 - 학교경찰연락협의회는 학생의 비행과 교내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와 경찰이 밀접하게 연락, 제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약 90%가 참가하여 약 2,600개가 조직되어 있음(조성호, 2020: 178)
- (독일) 학교폭력예방 주요정책은 폭력예방에 대한 조기교육, 광범위한 상담시스템, 기관간 원활한 네트워킹 및 전문적·장기적 치료 개입,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으로 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담당 독립적 정부위원회 설치(1987), 중앙 및 각 주 정부위원회(BLK) 학교폭력방지프로그램 운영임
-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네트워크가 잘 결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나 교육전문가를 파견하여 문제행동 징후가 심각한 학생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전문적 방법에 의한 치료개입을 청소년 1인당 2년에 걸쳐 지원함
 - 아동 및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으로 폭력을 예방하고 있는데, 아동 및 청소년 친

화적 도시 및 주택환경을 조성하여 폭력발생을 예방해주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조성호, 2020: 178)

- (핀란드) 학교폭력예방 주요정책은 키바(KiVa)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 ‘키바’란 ‘왕따에 맞서다’의 약자로 핀란드 교육부가 투르쿠대학 연구팀과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역할극을 포함한 집단따돌림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학교폭력예방 효과를 보고 있음
 - 1년간 총 20시간을 이수하며, 단편영화 감상, 역할극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학급 규정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기 위한 훈련과 왕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담은 컴퓨터 게임을 제공하고, 특정한 피해 및 가해 학생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임(조성호, 2020: 178)

참고문헌

- 박동균·이행준(2021). 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정책의 평가와 과제, 2021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7-402.
- 박주상(2013). 자치경찰제도와 지역치안거버넌스, 월간자치발전, 9월호, 30-37.
- 백병성(2012). 경찰 고객만족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8(4): 51-72.
- 정병주·정육상(2016).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요구도 분석,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지, 5(4): 65-81.
- 조성호 외(2020).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 경기연구원.
- 최길수(2019).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최수민(2015). 지역경찰의 역량모델 개발과 교육요구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 록〉 경찰법(약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전부개정]

경찰청(기획조정과) 02-3150-115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 3)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 4)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업무 및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예방
 -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⑥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사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7.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회

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찰청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경찰청을 두고,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4조(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⑦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경찰청장은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중단하여야 한다.

⑨ 경찰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 제6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

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⑩ 제6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찰청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장을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⑥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⑦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1.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본부·국·부 또는 과로 한다.

② 경찰청장·차장·국가수사본부장·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및 연구·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18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2.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3.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4.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5.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

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1.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호 단서에 따른다.

⑧ 그 밖에 위원의 임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각계각층의 관할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수, 자격,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24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도지사, 시·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

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7조(사무기구)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사무기구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5장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제28조(시·도경찰청장) ① 시·도경찰청에 시·도경찰청장을 두며,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수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시·도경찰청 차장) ① 시·도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②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그 지휘·명령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가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명령을 중단할 것을 의결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⑦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지원·조정 범위·기간 등을 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지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제1항의 지휘·명령권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조사·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 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두지 아니하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처리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다.

제3조(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시범운영 특례) ① 시·도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시범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경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경찰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하 이 조에서 “국가경찰위원회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등의 행위 또는 국가경찰위원회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9호 경찰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및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제1호,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4항제6호, 제31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6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경찰위원회”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로 한다.

⑥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국가경찰에”를 “경찰에”로 한다.

⑦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⑩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查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을 ” 경찰공무원(檢察搜查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으로 한다.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을 ”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⑬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⑭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8조제2항 및 제3항, 제219조제2항 및 제3항, 제309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⑯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 본문, 제15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⑱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3호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⑲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라목, 제4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제34조의2, 제39조제6항, 제41조제3항 본문, 제43조,

제49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3항제7호,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76조제5항, 제77조제2항, 제78조,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4조의2제1항, 제8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98조제1항, 제98조의2 본문, 제99조 전단,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8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0조제4항, 제112조,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제114조,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1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45조의2, 제14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56조제5호, 제1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을 “경찰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을 “경찰공무원” 으로 한다.

⑳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㉒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㉓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 을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㉔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제342조제2항 및 제366조제3항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에게” 를 각각 “경찰공무원에게” 로 한다.

제311조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이” 를 “경찰공무원이” 로 한다.

- ㉕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으로”를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 ㉖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 ㉗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㉙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3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㉚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9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㉛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로 한다.
- ㉜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및 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㉝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전단 및 후단, 제28조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㉞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㉟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㊱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이나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⑳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시·도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한다.
- ㉑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㉒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㉓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 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2호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 ㉖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 ㉗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 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3항제2호, 제98조제2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제1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각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7조제1항 및 제2항, 제98조제1항 본문, 제10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01조, 제102조, 제105조, 제111조제3항 후단, 제114조제1항, 제434조제5항, 제6항 본문 및 단서,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중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제주자치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본문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

회(이하 “국가경찰위원회“라 한다)” 로 한다.

제91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위원회” 를 각각 “국가경찰위원회” 로 한다.

제432조제2항, 제43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 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④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경찰청” 을 “시·도경찰청” 으로 한다.

④⑦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의3제2항, 제10조의3,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④⑧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 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 후단,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제25조의2 후단, 제28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40조제3항, 제42조제6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23조 중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④⑨ 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을 “시·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12조제4항, 제14조제6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⑤⑩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를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에게”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은” 을 “경찰공무원은” 으로 한다.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 을 “교육감 및 시·도경찰청장” 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을 각각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으로 한다.

<52> 해양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을 각각 “경찰공무원” 으로 한다.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 을 “경찰공무원” 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